

제요금 등 관리규정

제정 1983. 7. 1, 규정 제9호
 개정 1995. 7. 15
 개정 2008. 7. 16
 개정 2009. 9. 1
 개정 2010. 6. 1
 개정 2011. 3. 17
 개정 2014. 7. 8
 개정 2015. 9. 1
 규정명 개정 2017. 3. 28
 개정 2017. 3. 28
 개정 2017. 6. 28
 개정 2018. 1. 1
 개정 2019. 4.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원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6)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의료수가 및 사용대금(이하 “제요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수가를 말한다. (개정 2008.7.16, 2014.7.8, 2017.3.28)

제3조 (제요금의 결정)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요금은 당해 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수가는 법률로 정한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7.8)

② 일반환자는 요양급여수가의 140%를 적용하여 받는다.(개정 1995.7.15, 2014.7.8, 2015.9.1, 2017.3.28)

③ 입원실료(“기준 병실료” 제외), 장례식장사용료, 구급차사용료, 제증명수수료 등의 요금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4.7.8., 2017.3.28., 2018.1.1)

1. 입원실료는 병실규모 및 시설에 따라 요양급여수가의 300%범위 내에서 진료수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증명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내에서 진료수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4. 구급차 사용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원약정서)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가 연서한 입원약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16., 2010.6.1., 2018.1.1)

[제목개정 2011.3.17., 2018.1.1.]

제5조 (제요금의 징수) ① 제요금은 입원기간 중에 중간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7.15, 2009.9.1)

② 퇴원,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퇴원일의 입원실료는 입·퇴원시간에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며 전과 또는 입원실 등급 변경일의 입원실료는 전입된 입원실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 삭제 (2018. 1 .1)

제7조 (제요금의 감면) ① 원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요금을 감면(비급여에 한함)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계층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소외계층 등의 진료비 및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18.1.1., 2019.4.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요금을 감면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중에서 취약계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8)

1.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영수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빙서류, 의료보험자격조회 자료, 관련 신분증 사본(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
2. 관련기관 및 시설에서 발급한 진료지원의뢰서 등

④ 취약계층 진료지원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3.28)

1. 외래 :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동일 상병으로 계속해서 진료가 이뤄져야 할 경우 해당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
2. 입원 : 연간 3회 이내
3.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 본인요청에 의한 일부 비급여 항목 (치과진료, 단순 성형목적의 진료, 건강검진, 의무기록발급,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보호자 식대,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전문개정 2015.9.1]

제8조 (본원 직원의 공상치료) 본원 직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제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

제9조 (진료촉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 보험회사 기타 일반기

업체의 장이 소속직원의 치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위탁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종료 후에 해당기관장에게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증명 수수료 등 면제) ① 공공기관에서 직접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보험, 공단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극히 필요하거나 이송구간이 단거리로서 사용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급차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시행규칙에서 이동 2017.3.28) (개정 2017.6.28)

장례식장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빈 소 사 용 료	지하 1호실	1시간	15,000원	사용료는 시간당 계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지하 2호실	"	20,000원	
	1층 3호실	"	13,000원	
	1층 4호실	"	24,000원	
	2층 5호실	"	13,000원	
	2층 6호실	"	24,000원	
	2층 7호실	"	24,000원	
	2층 8호실	"	22,000원	
	3층 9호실	"	21,000원	
	3층 10호실	"	20,000원	
안치료		1시간	2,700원	
객실료		1일	30,000원	
염습 및 사용료	염습료	1일	50,000원	
	염습실 사용료	1일	150,000원	

[별표2] 삭제(2018.1.1.)

[별표3] (신설 2017.3.28.) (개정 2018. 1. 1, 2019. 4. 15.)

취약계층 등 감면대상 기준

구분	대상자	감액코드	지원규모	대상내역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본인부담 전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피해자로서, 해당사유로 인해 관할 경찰서장 및 지자체장, 관련시설 및 단체 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2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본인부담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해당 교도소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3	노숙자	노숙자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노숙인으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노숙인 복지시설장 또는 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4	노인학대피해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본인부담 전액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명시된 노인학대 피해자 본인으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및 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포함)로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다문화 이주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장으로 부터 의뢰된 자
6	장애인	장애인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장애인복지기관 및 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7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본인부담 전액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피해자(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로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8	새터민	새터민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대상자로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하나센터장 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구분	대상자	감액코드	지원규모	대상내역
			료(30%감면)	
9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	본인부담 전액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동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피해자 및 보호대상아동 본인으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0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본인부담 전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류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 관련 시설 또는 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1	저소득층 아동	원주드림스타트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아동복지법 제37조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으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드림스타트 센터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2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본인부담 전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본인으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청소년지원센터장 또는 청소년상담센터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14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15	치매검진대상자	치매검사	본인부담 50%	치매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로,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6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시설사용료(30%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관할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7	기타 취약계층	기타 취약계층	본인부담 전액, 장례식장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관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구분	대상자	감액코드	지원규모	대상내역
			시설사용료(30%감면)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 관련 복지시설 및 단체장으로부터 의뢰된 자
18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위원회 위촉위원			본인부담금 50%,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19	협약체결기관			의료원과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